근로계약서

1. 계약 당사자

	기 관 명	사업자번호	
사용자(갑)	대 표 자	업 태	
	소 재 지	사업종목	
근로자(을)	성 명	 주 소	
근도자(글)	생년월일	十 立	

2. 근로계약기간 :

부터 근로계약 기간에 정함이 없음.

- 3. 근무장소 : 서울 및 지역본부 또는 수탁운영시설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타 법인((사)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, (복)기아대책, (재)행복한나눔)으로의 이동, 타 지역으로의 이동, 수탁운영시설로의 이동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함.
- 4. 업무의 내용: 기구사역에 필요한 제반 업무 및 기구에서 요청하는 업무
- 5. 근로일/근로시간/휴게시간
 - 1) 근로일 : 월요일~금요일
 - 2)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
 - 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함.
 - ② 근로자는 합의에 따라 하기의 '선택적 출근시간대'의 범위 내에서 출근시각을 조절할 수 있다. 다만, '의무근로시간대'에는 반드시 근로를 제공해야 함.

선택적 출근시간대	휴게시간	의무근로시간대
07:00~10:00	12:00~13:00(60분)	10:00~15:00

- ③ 근로자의 출근시각은 매시 정각 또는 매시 30분에 출근한 것으로 봄.
- ④ 회사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을 경우, 전항에 의한 시업 및 종업시각과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.

_	۸1	$\overline{}$
6	OI	

1)	월급 :	원 (기본급:	원, 식대: 200,0	000원, 여비교통비: 70,000원)
2)	수당 : 명절•효행수	=당 <u>1,200,000</u> 원	<u> (</u> 설•추석: 각 50	0,000원, 어버이닡	t: 200,000원 / 지급기준일 근무 시, 지급)
3)	호봉 금액 : 호봉 건	간 금액은	원이며 재	무규정 30조에 따	라 호봉을 조정함.

- 4) 수습 급여 : 수습기간에 직원의 월 보수는 기본급의 100%를 지급하며 수습만료 시 인사규정 제7조에 따라 호봉이 산정됨.
- 5) 임금 지급일 및 지급방법 : 임금은 1일부터 말일까지 기산하여 당월 25일에 '을'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송금
- 7. 사회보험 적용: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, 건강보험의 4대 보험

8. 휴일

- 1) 토요일, 일요일, 국경일, 법정 휴일 및 법정 공휴일, 기타 정부가 임시로 정하는 날
- 2) '을'이 1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, 1주당 1일의 유급주휴일(일요일)을 부여함.
- 9. 휴가 :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주며, 그 외 휴가는 기구의 취업규칙에 따름.

10. 기타

- 1) 기독교 정신을 기본으로 제규정을 준수하며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음.
- 2) 본 계약의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 운영규정 및 노동관계법령에 의함.

위 갑:

3)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직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용을 연장 또는 철회할 수 있음.

위 읔 :	(이)

(인)